

2003. 9. 17.

第102回 臨時會 第1次 會議

# 條 例 檢 討 報 告

|                       |   |
|-----------------------|---|
| 거창군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 .....  | 1 |
|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 | 8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강동수

# [ 거창군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 ]

## 검 토 보 고

###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 제 출 일 : 2003. 9. 8.

○ 제 출 자 :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03. 9. 8.

다. 의안번호 : 제 2003 - 43호

### 2.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가. 개정이유

○ 2004년도 공기업 전환에 따라 수익자 부담 원리를 도입하고, 독립채산 기반조성과

○ 그동안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하는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하여 상수도사업의 재정적자를 해소하고, 불합리한 요금 체계를 개선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제명을 “거창군수도급수조례”에서 “거창군상수도급수조례”로 함 (안 제명)

○ 급수 공사 신청에 있어 세대별, 업종별 급수공사 승인을 분리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함 (안 제6조 제5항)

○ 대행업자가 수탁 받은 공사를 하도급 또는 명의를 대여하였을

- 경우에는 대행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 제6항)
- 상수도 사용료를 일률적으로 30% 인상함 (안 제28조 제1항 별표2)
- 업종 단계를 통폐합함 (안 제29조 별표3)
  - 현행 : 6종(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옥탕1종, 옥탕2종, 전용공업)
  - 변경 : 3종(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 중수도요금의 감면비율을 변경함 (안 제39조 제4항)
  - 현행 : 가정용 50%, 업무용 40%
  - 변경 : 가정용 70%, 업무용 50%
-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과태료 처분 금액의 30%, 세입증대 및 과징제도 발전 등에 이바지한 자에게는 1건당 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안 제44조)

### 3. 검토의견

#### 가. 용 어(제8조 제6항) ..... p41

- 급수공사 대행 지정업체가 하도급, 또는 명의를 대여하였을 경우에는 대행업자 지정을 “취소”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취소와 철회를 행정을 일방적으로 같이 쓰고 있습니다만 이 경우의 취소는, 하도급과 명의를 대여하였을 때이기 때문에 철회라고 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 왜 그러냐 하면, 지정받은 업체가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와 하도급 명의를 대여한 것을 같이 했을 경우는 취소를 혼용해서 써도 됩니다마는, 하도급의 경우만 썼을 때에는 장래에도 효력이 발생하려면 철회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취소는 하자있는 행정행위가 유효하게 성립된 경우로서 취소효과는 소급 적용
- 철회는 하자없이 성립된 행정행위로서 새로운 사정에 의거 장래를 향해 효력을 소멸시킴(소급적용 불가)
- 따라서 철회로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봄

#### 나. 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제18조) ..... p43

- 급수공사 중 신청인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닐 경우 군수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향을 신설했음 (제3항)

⇒ 조례안 제47조에서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 또는 행위를 한 자 및 수도공사를 하면서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반면, 군수가 수도공사를 하면서 사유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 중과실이 아닌 경우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은 이율배반입니다.

그 조항과 이 조항을 비교하는 것은, 우리 수도시설을 파괴한 자로부터는 돈을 받고, 우리가 수도공사를 하다가 남의 집 담장을 헐었다고 치더라도 그것은 물어 주지 않겠다는 논리같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중과실, 경과실 구분 없음)로 인해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또한, 국가배상법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사법상의 손해배상 문제가 따르  
므로 동향을 꼭 두어야만 하는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안은 마산시 조례에서 우리와 같이 책임지지 않겠다  
는 조항이 있습니다마는, 부산시의 수도급수조례에는  
없습니다.

#### 다. 과태료 및 행정처분(제46조) ..... p50, p56

-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의 징수를 면탈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 제3항 및 제13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합니다.
- 그러나 과태료를 납부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시는 이행시까지 급수정지처분을 하거나 행정명령 불이행시까지 급수 정지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 『별표5』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 중 행정처분은 조례안 제43조에 의한 급수정지처분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중복되어 있는 별표를 이야기하자면, 별표5의 제6호 내지 제9호에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급수정지 처분하겠다는 내용은, 조례안 제43조 제1항 제1호와 중복되고, 또, 별표 제1호와 조례안 제43조 제1항 제2호와 중복되는 등 아홉 군데가 중복되어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를 받기 위한 급수정지처분은 행정법상의 논리에 의하면 공급거부에 해당합니다. 이는 간접적인 강제 수단이며, 상대방에 대한 부담적 행정작용이므로 반드시 법적 근거를 요한다는 것이 학설(통설)임 (예 : 위반건축물의 수도, 전기 공급 거부)

⇒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모두 삭제하는 방안

- ① ...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과한다 → ...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별표5』 “과태료 및 행정처분기준” → “과태료 부과 기준”으로 하고 “제1호 내지 제9호의 행정처분”란을 삭제

⇒ 행정처분 중 급수정지처분에 관한 사항만 삭제하는 방안

- ① 『별표5』 “과태료 및 행정처분기준의 제3호 내지 제5호 중 “명령불이행시까지 급수정지처분”을 삭제
- ② 제6호 내지 제9호 중 “행정처분 사항”란을 삭제

라. 상수도 사용료 인상(제28조 제2항) .....p45, p53

- 이 부분은 수도급수 조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용료가 원가에 미달하여 독립채산 기반을 위해서 요금 인상을 해야 한다는 데에는 뜻을 같이한다고 생각합니다. 표를 한번 봐 주십시오. 이 표의 업종별에는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옥탕1·2종, 이렇게 해 놓은 것은 종전 용도로 구분해 놓은 겁니다.

종전 용도 중에서 업무용과 영업용은 현행 개정안에 의하

면 일반용이 되겠습니다.

가정용 요금을 올린 율을 보면 20톤에서 30톤 사용하는 사람이 톤당 477원에서 669원으로 인상되면 42%가 인상됩니다.

그 다음에 30톤에서 40톤은 최대 66%까지 인상되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창녕군은 현실화를 했습니다. 우리보다 상당히 많이 올렸습니다.

그런 반면에 인상을 하지 않았지만 4단계로 되어 있는 김해시 같은 경우는 많이 올려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창녕군은 3단계로 우리와 같이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요금 체제가 30톤, 40톤 부분은 가정용이 비싸고, 일반용이 오히려 저렴한 것으로 되어 있고, 김해는 4단계로 되어 있으므로 해서 업무용, 영업용은 가정용보다 높게 되어 있습니다.

검토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상수도사용료 인상비교표

(단위 : 톤, 원, %)

| 업종별  | 사 용 량<br>(톤) | 현행요금<br>(원) | 인상요금<br>(원) | 인 상 륜 |       | 타 시 · 군 |       |
|------|--------------|-------------|-------------|-------|-------|---------|-------|
|      |              |             |             | 금액(원) | 비율(%) | 창녕      | 김해    |
| 가정용  | 0 ~ 10       | 356         | 514         | 158   | 44    | 630     | 430   |
|      | 10 ~ 20      | 414         | 514         | 100   | 24    | 630     | 430   |
|      | 20 ~ 30      | 471         | 669         | 198   | 42    | 810     | 620   |
|      | 30 ~ 40      | 526         | 875         | 349   | 66    | 1,060   | 950   |
|      | 40 ~ 50      | 584         | 875         | 291   | 50    | 1,060   | 950   |
|      | 50초과         | 641         | 875         | 234   | 37    | 1,060   | 950   |
| 업무용  | 0 ~ 20       | 517         | 632         | 115   | 22    | 780     | 520   |
|      | 20 ~ 30      | 586         | 632         | 46    | 8     | 780     | 730   |
|      | 30 ~ 50      | 586         | 759         | 173   | 30    | 940     | 730   |
|      | 50 ~ 100     | 661         | 885         | 224   | 34    | 1,100   | 830   |
|      | 100 ~ 300    | 736         | 1,101       | 365   | 50    | 1,250   | 1,130 |
|      | 300초과        | 805         | 1,137       | 332   | 41    | 1,410   | 1,130 |
| 영업용  | 0 ~ 30       | 575         | 632         | 57    | 10    | 780     | 960   |
|      | 30 ~ 50      | 661         | 759         | 98    | 15    | 940     | 960   |
|      | 50 ~ 100     | 747         | 885         | 138   | 18    | 1,100   | 1,360 |
|      | 100 ~ 300    | 833         | 1,101       | 268   | 32    | 1,250   | 1,650 |
|      | 300초과        | 833         | 1,137       | 304   | 36    | 1,410   | 1,650 |
| 육탕1종 | 0 ~ 200      | 506         | 664         | 158   | 31    | 1,010   | 670   |
|      | 200 ~ 300    | 586         | 797         | 211   | 36    | 1,220   | 1,020 |
|      | 300 ~ 500    | 667         | 929         | 262   | 39    | 1,420   | 1,020 |
|      | 500초과        | 748         | 1,062       | 314   | 42    | 1,620   | 1,050 |
| 육탕2종 | 0 ~ 200      | 885         | 664         | △221  | △25   | 1,010   |       |
|      | 200 ~ 300    | 1,026       | 797         | △229  | △22   | 1,220   |       |
|      | 300 ~ 500    | 1,026       | 929         | △97   | △9    | 1,420   |       |
|      | 500 ~ 1000   | 1,168       | 1,062       | △106  | △9    | 1,620   |       |
|      | 1000초과       | 1,311       | 1,062       | △249  | △19   | 1,620   |       |

- 일률적으로 30% 인상하였다 하나, 가정용의 경우 최대 66%까지 인상되었고, 또, 업무용은 영업용과 통합하여 일반용으로 변경하면서 최고 50%까지 인상된 반면, 영업용의 인상률은 다소 낮게 책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용을 일반용으로 통합하면서 영업용은 수도요금 현실화를 100%로 볼 때, 종전부터 가정용보다 비싸기 때문에 인상

률이 적게 되어 있는 것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 종전 옥탕1종은 31%~42%까지 인상된 반면, 옥탕 2종은 9%에서 25%까지 인하되었고
- 또한, 업무용과 영업용을 일반용으로, 또, 옥탕1종과 옥탕2종을 대중탕용으로 통합하면서 종전 업무용과 옥탕1종 사용자는 평균 인상률보다 더 많이 인상되었다고 봄.

⇒ ① 가정용의 경우 35톤의 물을 사용하는 경우 종전 요금으로 누진률을 적용해서 15,040원이고, 인상하고자 하는 요금으로 계산하면 21,345원으로 종전보다 41.9%에 해당하는 6,305원이 인상되었습니다.

5톤을 쓰는 경우 종전에 1,780원인데 개정된 대로 하면 2,570원으로 790원이 오른 44%, 25톤을 쓸 경우는 현재 1만원에서 1만 3,000원으로 36%, 15톤을 쓰는 경우는 36.9%가 인상됩니다.

그렇게 인상되는 반면에, 업무용으로 35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종전 요금으로 19,130원이나 인상하고자 하는 요금으로 계산하면 22,763원으로 종전보다 19%가 많은 3,630원만 인상된다는 결과가 나오는데, 일률적으로 30%라는 인상률은 어떤 산출기초에 의거 산정한 것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② 가정용이 일반용보다 더 저렴하게 수도물을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 가정용 20 ~ 30톤의 사용요금이 톤당 669원인 반면, 일반용은 632원으로 가정용보다 37원이 싸고, 또, 가정용 30 ~ 50톤의 사용자는 톤당 875원인 반면,
- 일반용은 759원으로 가정용보다 116원 낮게 되어 있는 등, 5.5% ~ 13.3% 정도 가정용이 더 비싸게 책정

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전문위원이 볼 때에는 이러한 이유는, 업종의 단계를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는 창녕군의 경우와 거창군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6단계에서 4단계로 운용하고 있는 김해시의 경우에는 업무용과 영업용으로 분리함으로 인해 가정용요금의 영업용보다 많아지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정용과 일반용을 비교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업종별          | 사 용 량<br>(톤) | 현행요금<br>(원) | 인상요금<br>(원) | 인 상 륜  |        |
|--------------|--------------|-------------|-------------|--------|--------|
|              |              |             |             | 금 액(원) | 비 율(%) |
| 가정용          | 20 ~ 30      | 471         | 669         | 198    | 42     |
|              | 30 ~ 40      | 526         | 875         | 349    | 66     |
|              | 40 ~ 50      | 584         | 875         | 291    | 50     |
| 일반용<br>(업무용) | 20 ~ 30      | 586         | 632         | 46     | 8      |
|              | 30 ~ 50      | 586         | 759         | 173    | 30     |

③ 일시에 과도한 요금인상은 사용자들로부터 강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 예상되고 일시에 과도하게 인상할 수밖에 없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④ 업종을 통합하지 아니하고 현상에서 인상액을 조정하는 방안이나 개정안에 의한 업종분류에 따라 하되, 연도별로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4. 참 고

- 2003년도 지방상·하수도 사업 추진지침(행정자치부)
- 상수도요금 인상을 위한 거창군 소비정책 심의회 심의(2003. 5. 30)

# [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

## 검 토 보 고

###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 제 출 일 : 2003. 9. 8.

○ 제 출 자 :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03. 9. 8.

다. 의안번호 : 제 2003 - 44호

### 2.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가. 개정이유

○ 2004년도 공기업 전환에 따라 원인자 부담 원리를 도입하고, 독립채산 기반을 조성하여야 하는바,

○ 그동안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하는 하수도 사용요금을 현실화 하여 하수도사업의 재정적자를 해소코자 함.

나. 주요골자

○ 배수설비 공사비는 선납해야 하나,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안 제3조)

○ 하수도 사용료를 일률적으로 30% 인상함 (안 제11조 제2항 별표1)

○ 공공하수도 점용시 정당한 사유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5조 제5항)

-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매년 2월말까지 지역 일간지에 공고하고, 원인자부담금의 고지 및 징수방법을 규칙으로 정함  
(안 제16조 제3항, 제4항)
- 원인자부담금 산정방법 : 별표 5

### 3. 검토의견

#### 가. 원인자부담금(제16조) ..... p67

- 원인자부담금은 『별표 6』에 의한 방식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현행 조례와 비교해서 새롭게 달라진 내용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

#### 나. 가 산 금(제17조 제2항) ..... p69

-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날로부터 체납된 금액의 1천분의 12에 해당하는 증가산금을 부과”로 된 부분 중 “경과한 날로부터”가 중복 표기되어 있으므로
- “매 1월이 경과할 날로부터” ⇒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로 수정

#### 다. 하수도 업종 구분(제11조 제2항) ..... p65, p72

- 하수도업종 구분은 『별표 2』와 같이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으로 구분하고 있고, 상수도요금은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으로만 구분
- 상수도 사용료 업종구분상 “일반용”에 해당하는 제조업체를 “산업용”으로 별도 분리·구분하는 것보다는 상수도와 체계를 같이하여 운용하면 요금 부과·고지 등 업무추진상 효율적이고 수용자 입장에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며 하수도 상수도와 업종을 분리하는 이유가 무

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라. 하수도 사용료 인상(안 제11조 제2항) ..... p66, p71

- 일률적으로 현행보다 30% 인상하였으나 사용료 인상단가를 업종별, 사용량별 인상률을 보면,
  - 가정용의 경우 가장 많이 배출하는 10톤 ~ 20톤 미만의 경우는 50% 인상되었고, 종전 업무용은 일반용으로 업종을 통합하면서 최대 72%, 최소 37%가 인상되었고
  - 반면, 종전 영업용은 9.8% ~ 29%선에서 요금 인상액이 결정되었음.

- ⇒ ① 일시에 과도한 요금 인상으로 인해 주민들의 거센 저항이 예상된다고 보며 이렇게 많이 올릴 수밖에 없는 사유
- ② 연도별 점진적 인상하면서 부족재원은 일반회계로부터 충당하는 등 방안이 없는 것인지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함.
- ③ 개정안에 의한 사용료 인상액이 적절한 것인지 아니면 사용료를 재조정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논의가 필요함.

마. 업종간 사용료 격차(안 제11조 제2항) ..... p66

- 업종 구분에 따라 요금을 부과해 나가고 있으나 앞으로는 업종간 요금격차가 나지 아니하도록 하는 추세임.
- 상수도 요금은 가정용과 일반용 간의 격차는 근접(2%~18%)하게 책정한 반면, 하수도요금은 양 업종간 격차는 18%에서 28%로서 격차가 크게 벌어지게 책정하게 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
- 하수도 사용료 인상비교표도 마찬가지로 종전 업종을 계산해 놓았습니다. 창녕하고 마산하고 비교했는데 우리 요금이 많이 책정되었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인상은 적게 되었습니다만, 인상률은 종전에 올린 시점과 현재 올린 시점의 괴리 차이로, 상당히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 하수도 사용료 인상비교표

(단위 : 톤, 원, %)

| 업종별  | 사 용 량<br>(톤) | 현행요금<br>(원) | 인상요금<br>(원) | 인 상 륜 |       | 타 시 · 군          |                                     |
|------|--------------|-------------|-------------|-------|-------|------------------|-------------------------------------|
|      |              |             |             | 금액(원) | 비율(%) | 창녕               | 마산                                  |
| 가정용  | 10미만         | 68          | 96          | 28    | 41    | 108              | 144                                 |
|      | 10 ~ 20미만    | 80          | 120         | 40    | 50    | 165              | 181                                 |
|      | 20 ~ 30미만    | 92          | 120         | 28    | 30    | 165              | 181                                 |
|      | 30 ~ 40미만    | 104         | 152         | 48    | 46    | 231              | 181                                 |
|      | 40 ~ 50미만    | 118         | 152         | 34    | 29    | 231              | 181                                 |
|      | 50초과         | 130         | 152         | 22    | 17    | 231              | 236                                 |
| 업무용  | 0 ~ 20미만     | 78          | 134         | 56    | 72    | 단일<br>구간<br>154원 | 163                                 |
|      | 20 ~ 30미만    | 98          | 134         | 36    | 37    |                  | 163                                 |
|      | 30 ~ 50미만    | 98          | 156         | 58    | 59    |                  | 163                                 |
|      | 50 ~ 100미만   | 120         | 185         | 65    | 54    |                  | 234                                 |
|      | 100 ~ 300미만  | 144         | 207         | 63    | 43    |                  | 267                                 |
|      | 300초과        | 168         | 238         | 70    | 42    |                  | 267                                 |
| 영업용  | 0 ~ 30미만     | 120         | 134         | 14    | 12    | 220              | 173                                 |
|      | 30 ~ 50미만    | 142         | 156         | 14    | 9.8   | 270              | 173                                 |
|      | 50 ~ 100미만   | 163         | 185         | 22    | 13    | 319              | 244                                 |
|      | 100 ~ 300미만  | 185         | 207         | 22    | 12    | 363              | 276                                 |
|      | 300 ~ 500미만  | 185         | 238         | 53    | 29    | 363              | 276                                 |
|      | 500초과        | 206         | 238         | 32    | 16    | 396              | 276                                 |
| 욕탕1종 | 0 ~ 200미만    | 96          | 125         | 29    | 30    | 대중<br>탕용<br>192원 | 1천톤:<br>162원/<br>1천톤<br>이상:<br>183원 |
|      | 201 ~ 300미만  | 113         | 147         | 34    | 30    |                  |                                     |
|      | 301 ~ 500미만  | 130         | 169         | 39    | 30    |                  |                                     |
|      | 500초과        | 148         | 192         | 44    | 30    |                  |                                     |
| 욕탕2종 | 0 ~ 200미만    | 169         | 125         | △44   | △26   |                  |                                     |
|      | 201 ~ 300미만  | 199         | 147         | △52   | △26   |                  |                                     |
|      | 301 ~ 500미만  | 229         | 169         | △60   | △26   |                  |                                     |
|      | 500초과        | 260         | 192         | △68   | △26   |                  |                                     |
| 산업용  | 톤당           | 72          | 94          | 22    | 31    | 165              | 160                                 |

## 4. 참 고

- 2003년도 지방상·하수도 사업 추진지침(행정자치부)
- 상수도요금 인상을 위한 거창군 소비정책 심의회 심의(2003. 5. 30)